

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
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2026. 07.



수원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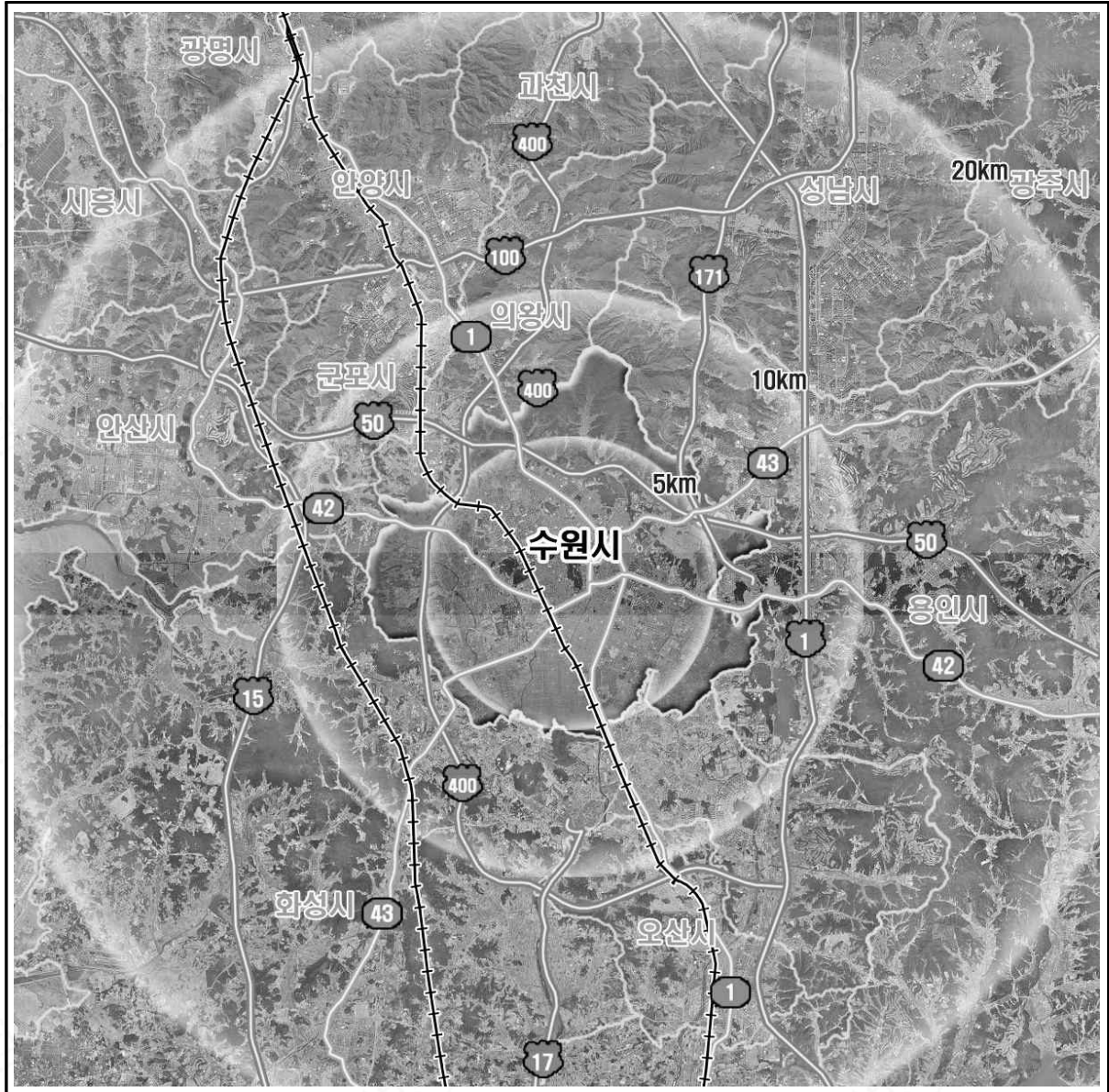
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1. 공개취지 및 방법

- 「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, 「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(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)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함
- 공개방법 : 수원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

2. 계획의 내용

- 계 획 명 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
- 계획수립/승인기관 : 수원시
- 시간적 범위
 - 기준년도 : 2025년, 목표연도 : 2030년
- 공간적 범위 : 경기도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(121.09km²)
 - * 전략환경영향평가(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) 중점평가 대상면적 : 252,064.0m²



(그림 2 - 1) 수원시 위치도

2.1 주요 계획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현황

- 본 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금회 타당성검토를 통해 용도지역 5개소,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, 용도지구 78개소, 도시계획시설 29개소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며, 전략환경영향평가(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) 중점평가 대상사업은 용도지역 4개소(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포함)가 해당됨

<표 2 - 1>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현황 (단위:개소)

구분	총 계획수	중점평가 대상사업	중점평가 대상사업 제외	비 고
합계	109(2)	4(2)	105	
용도지역	5	4	1	
지구단위계획구역 ^{주)}	(2)	(2)	-	
용도지구	78		78 (조정74, 폐지4)	
도시계획시설	29		29 (신설17, 폐지12)	

주) () :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사업 개소는 용도지역에 포함

- 금회 재정비 계획 중 용도지구(시가지경관지구 72개소 조정, 방화지구 2개소 축소, 4개소 폐지), 도시계획시설(26개소)에 대해서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2] 비고3 및 비고4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

(1) 용도지구 : 금회 계획은 축소 및 폐지(방화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)

(2) 도시계획시설 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4], 가. 3)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 ⇒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해당

나.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

• 총괄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
	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	121,180,275.9	감)90,275.9	121,090,000.0	100.0
주거 지역	소계	45,482,491.7	증)252,064.0	45,734,555.7	37.7
	제1종 전용주거지역	153,469.3	증)50,035.0	203,504.3	0.2
	제1종 일반주거지역	12,231,550.1	증)55,572.0	12,287,122.1	10.1
	제2종 일반주거지역	20,424,732.0	-	20,424,732.0	16.9
	제3종 일반주거지역	10,110,309.1	-	10,110,309.1	8.3
	준주거지역	2,562,431.2	증)146,457.0	2,708,888.2	2.2
상업 지역	소계	6,286,111.4	-	6,286,111.4	5.1
	중심상업지역	4,607,525.3	-	4,607,525.3	3.8
	일반상업지역	1,388,231.0	-	1,388,231.0	1.1
	근린상업지역	290,355.1	-	290,355.1	0.2
공업 지역	소계	4,113,718.1	-	4,113,718.1	3.4
	일반공업지역	4,007,274.7	-	4,007,274.7	3.3
	준공업지역	106,443.4	-	106,443.4	0.1
녹지 지역	소계	65,297,954.7	감)342,339.9	64,955,614.8	53.8
	보전녹지지역	1,081,803.7	감)11,631.0	1,070,172.7	0.9
	생산녹지지역	6,618,287.2	-	6,618,287.2	5.5
	자연녹지지역	57,597,863.8	감)330,708.9	57,267,154.9	47.4

비고) 결정 현황은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기준이며, 변경 예정 내용은 기정 재정비 고시 내용에 금회 재정비 시 변경 사항만을 반영한 내용임

• 변경조서

유형	연번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변경사유
			기정	변경		
					263,695.0 (252,064.0)	* () :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면적
유형 1	1	장안구 정자동 937번지 일원	자연녹지 지역	제1종 일반주거 지역	55,572.0	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대학부지의 건축밀도 제한으로 인해 교육시설 증축에 한계가 있어,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대학기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
유형 1	2	영통구 원천동 산5-1번지 일원	자연녹지 지역	준 주거지역	146,457.0	대상지는 운동장 및 대학병원 등 공공성이 높 은 도시형 시설이 입지한 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관리취지와 부합하지 않아, 해당 시설 의 이용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
유형 1	3	장안구 연무동 산11-2번지 일원	보전녹지 지역	자연녹지 지역	11,631.0	현재 경기도남부경철철 내 사건기록관 증축계 획 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기준(20% 이하) 을 초과함에 따라 건폐율확보 및 공공업무수행 여건개선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일부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
유형 2	4	장안구 이목동 242-22번지 일원	자연녹지 지역	제1종 전용주거 지역	35,005.0	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(주 거) 반영 및 자연녹지지역 내 집단취락지에 대 한 건폐율 완화 민원 가중에 따라 해당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신설)
유형 2	5	장안구 조원동 130-2번지 일원	자연녹지 지역	제1종 전용주거 지역	15,030.0	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(주 거) 반영 및 자연녹지지역 내 집단취락지에 대 한 건폐율 완화 민원 가중에 따라 해당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신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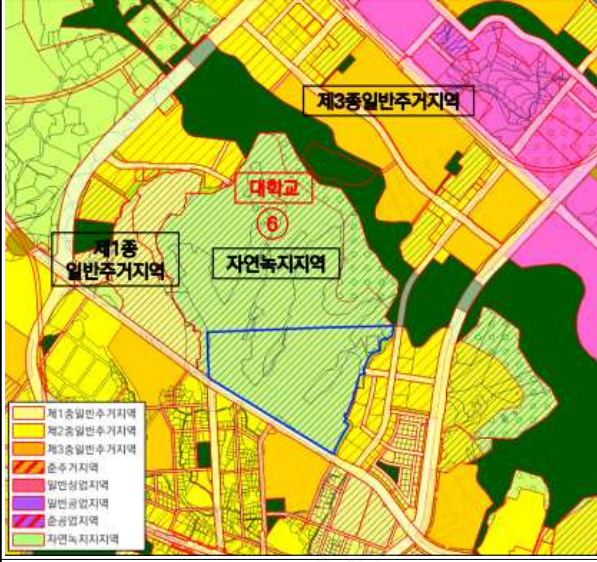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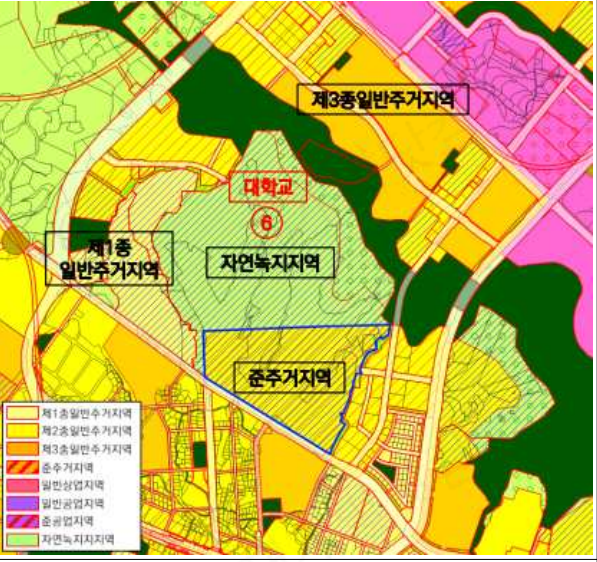
주)  :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

비고) 유형1 : 민원요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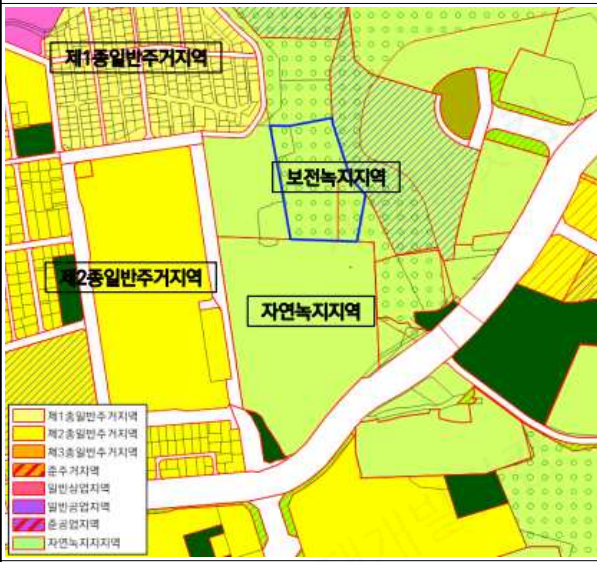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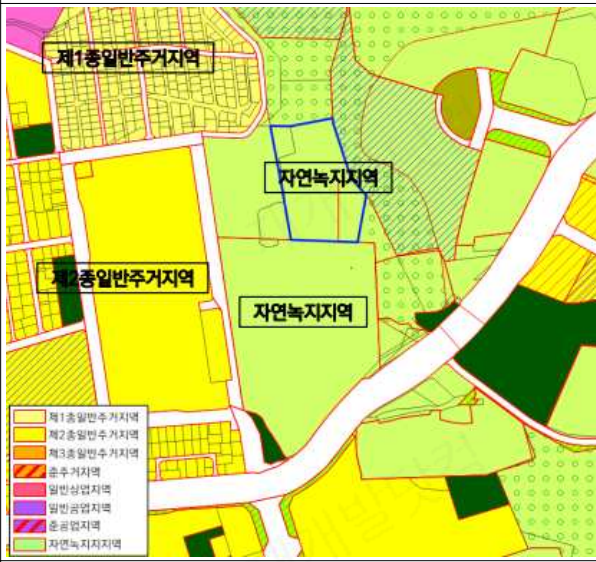
유형2 :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연번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
		기정	변경	
1	장안구 정자동 937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55,572
변경 사유	•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동남보건대학교 대학발전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(자연녹지지역 →제1종일반주거지역) ※동남보건대학교 현황: 건폐율 19.99% / 용적률 99.39% → 계획만영시 건폐율 22.20% / 용적률 116.45%			
				
위치도		항공사진		
				
도시관리계획도(기정)		도시관리계획도(변경(안)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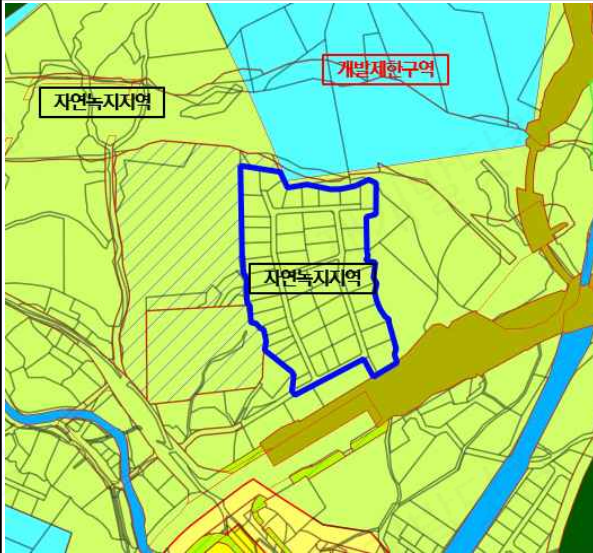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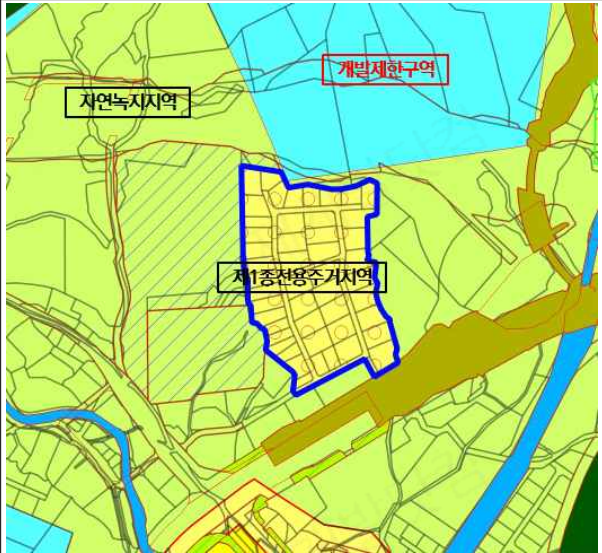
(그림 2 - 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- 동남보건대학교 증축

연번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
		기정	변경	
2	영통구 원천동 산5-1일원	자연녹지지역	준주거지역	146,457
변경 사유	•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아주대학교 대학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운동장 및 병원 부지의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(자연녹지지역 → 준주거지역) ※아주대학교 현황: 건폐율 16.8% / 용적률 71.3% → 계획반영시 건폐율 38.5% / 용적률 319.1%			
				
위치도		항공사진		
				
도시관리계획도(기정)		도시관리계획도(변경(안)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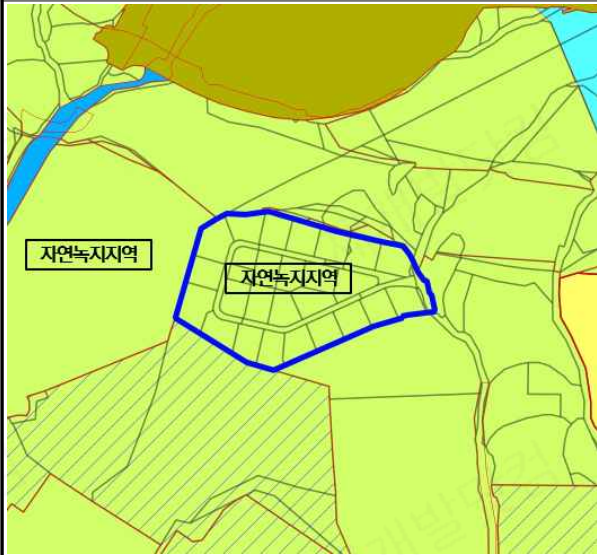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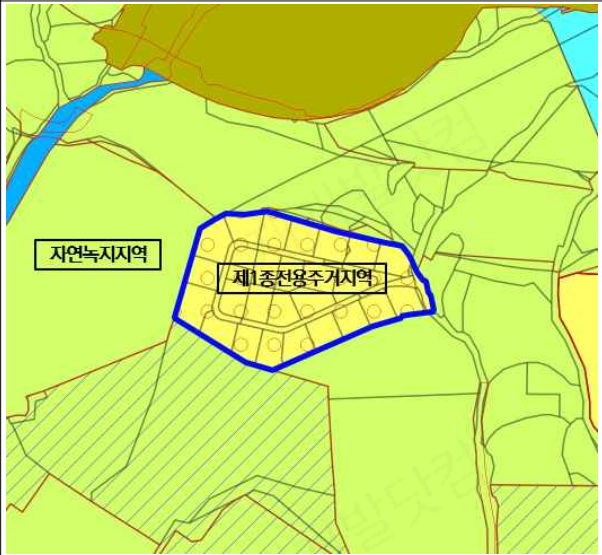
(그림 2 - 3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- 아주대학교 증축

연번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
		기정	변경	
3	장안구 연무동 산11-2일원	보전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11,631
변경 사유	• 현재 경기도남부경찰청 내 사건기록관증축계획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기준 (20% 이하)을 초과함에 따라 건폐율 확보 및 공공업무 수행여건개선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※ 경기남부경찰청 현황: 건폐율 19.3% → 계획반영시 건폐율 24.2%			
				
위치도		항공사진		
				
도시관리계획도(기정)		도시관리계획도(변경(안))		

(그림 2 - 4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- 경기남부경찰청 증축

연번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
		기정	변경	
4	장안구 이목동 242-22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35,005
변경 사유	•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(주거) 반영 및 자연녹지지역 내 집 단취락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민원 가중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결 정(신설) 및 용도지역 변경			
				
위치도		항공사진		
				
도시관리계획도(기정)		도시관리계획도(변경(안))		

(그림 2 - 5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- 동원고 일원

연번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
		기정	변경	
5	장안구 조원동 130-2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15,030
변경 사유	•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(주거) 반영 및 자연녹지지역 내 집단취락지에 대한 건폐율완화민원 가중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결정(신설) 및 용도지역 변경			
				
위치도		항공사진		
				
도시관리계획도(기정)		도시관리계획도(변경(안))		

(그림 2 - 6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- 솔대성당 일원

다. 용도지구 변경

• 총괄표

구 분		기정		변경		변경후		비 고
	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
합계		125	11,643,665.0	감)1	감)770,181.0	124	10,873.484.0	
경관지구	소계	74	5,445,329.0	-	감)353,429.0	74	5,091,900.0	•변경 : 72개소
	자연경관지구	1	33,360.0	-	-	1	33,360.0	
	시가지경관지구 주1)	72	4,995,389.0	-	감)353,429.0	72	4,641,960.0	
	특화경관지구	1	416,580.0	-	-	1	416,580.0	
고도지구		19	2,069,884.0	-	-	19	2,069,884.0	
방화지구 ^{주2)}		14	3,530,939.0	감)1	감)416,752.0	13	3,114,187.0	•축소: 2개소 (감 262,122.0㎡) •폐지 : 4개소 (감 154,630㎡)
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		2	76,250.0	-	-	2	76,250.0	
자연취락지구		16	521,263.0	-	-	16	521,263.0	

주) 1. 시가지경관지구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와 불부합하는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
2. 방화지구 :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방화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 및 해제
비고) 결정 현황은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기준이며, 변경 예정 내용은 기정 재정비 고시 내용에 금회 재정비 시 변경 사항만을 반영한 내용임

라. 도시계획시설 변경

• 총괄표

구분	기정		변경		변경후		비고
	개 소	면 적(m ²)	개 소	면 적(m ²)	개 소	면 적(m ²)	
합계	6,564	49,166,258.6	증) 5	감) 81,823.8	6,569	49,084,434.84	
교통시설	4,692	19,240,821.0	증) 9	감) 81,033.3	4,701	19,159,787.70	•도로 : 17개소 신설 / 8개소 폐지
공간시설	1,282	16,602,322.1	감) 4	감) 4,128.0	1,278	16,598,194.14	•공원 : 1개소 폐지 •녹지 : 3개소 폐지
유통·공급 시설	73	736,552.9	-	-	73	736,552.90	
공공·문화 체육시설	441	8,042,285.0	-	증) 3,337.5	441	8,045,622.50	
방재시설	60	4,074,144.3	-		60	4,074,144.30	
보건위생시설	3	101,735.9	-	-	3	101,735.90	
환경기초시설	13	368,397.4	-	-	13	368,397.40	

주) 연속성을 고려, 방재시설 변경(하천구역 외 사유지 제외), 지적불부합, 시설번호 분리 중복결정, 위치 현행화 등 조서
정정 등이 주요 변경내용

비고) 결정 현황은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기준이며, 변경 예정 내용은 기정 재정비 고시 내용에 금회 재
정비 시 변경 사항만을 반영한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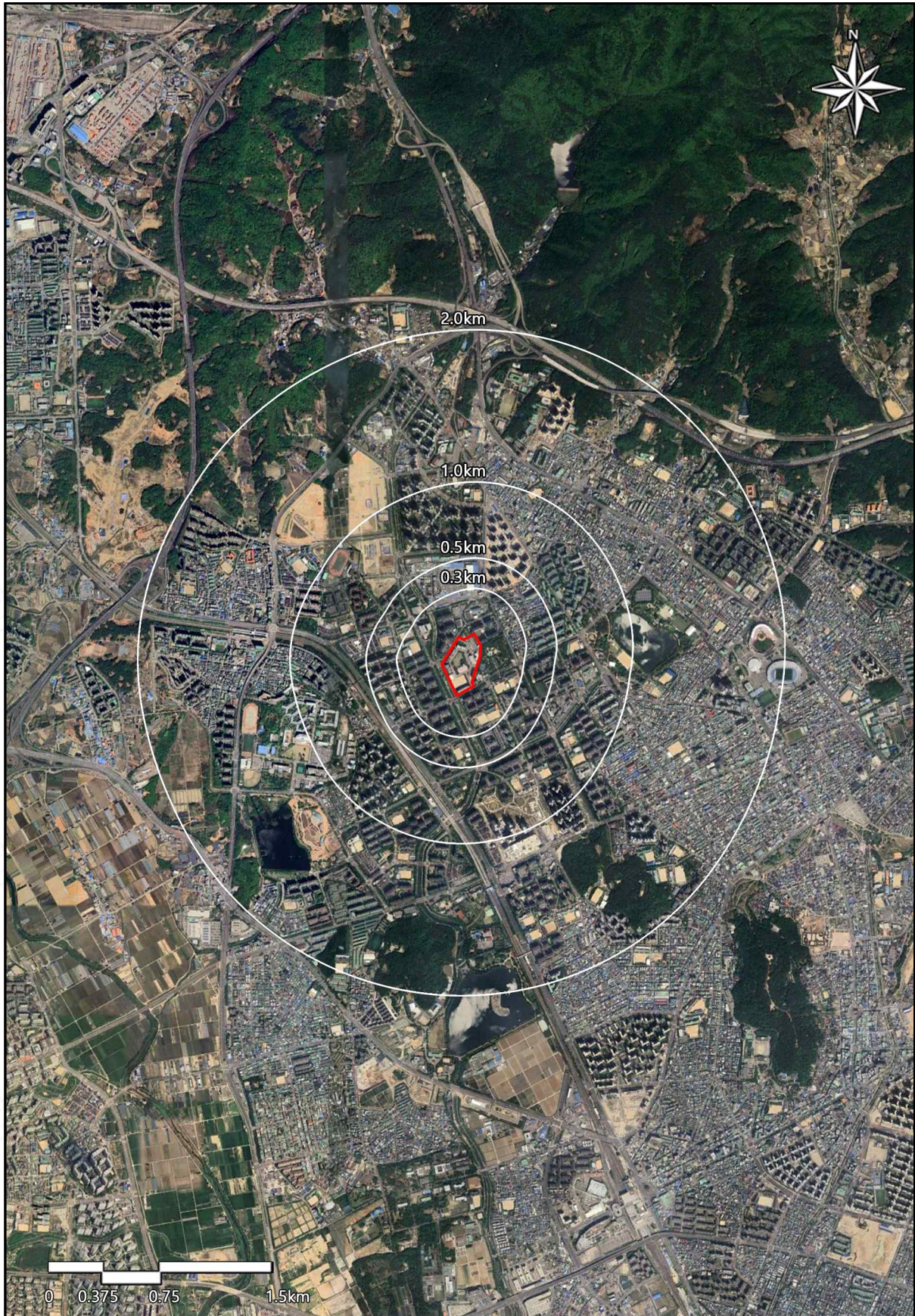
3.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3.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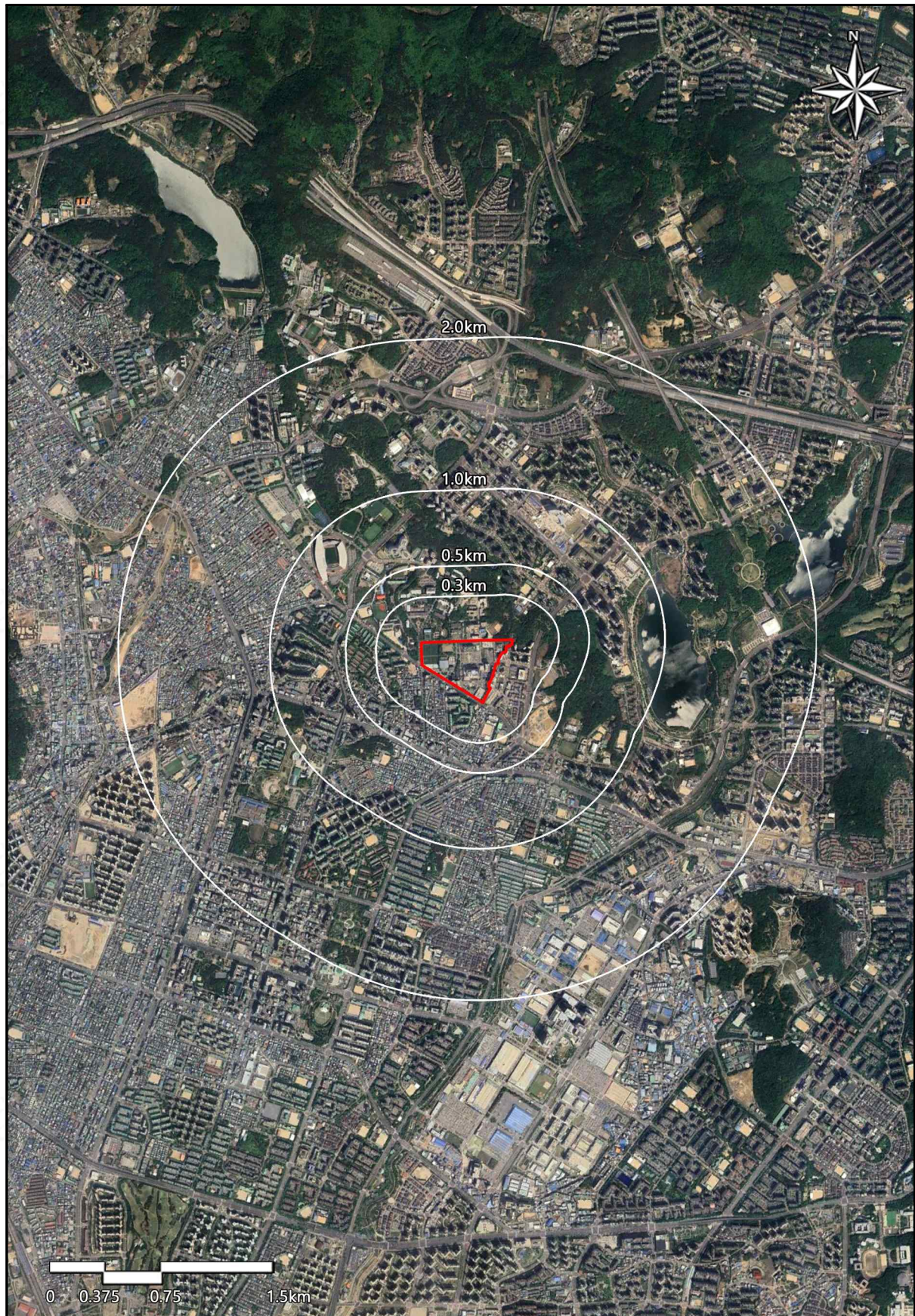
-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항목 별로 구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함
- 금회 용도지역 5개소, 용도지구 78개소(방화지구 6개소((2개소 축소, 4개소 폐지), 시가지 경관지구 72개소 변경), 도시계획시설 29개소 등을 결정(변경)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, 이 중 용도지역 5개소를 중점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함
- 그 외 계획지구는 대부분 선형 및 경계조정, 용도지구 변경 및 해제(방화지구, 시가지경관 지구), 현황을 고려한 선형조정, 미조성 및 제척, 분리 결정시설의 합병 등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<표 3 - 1> 환경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주요 검토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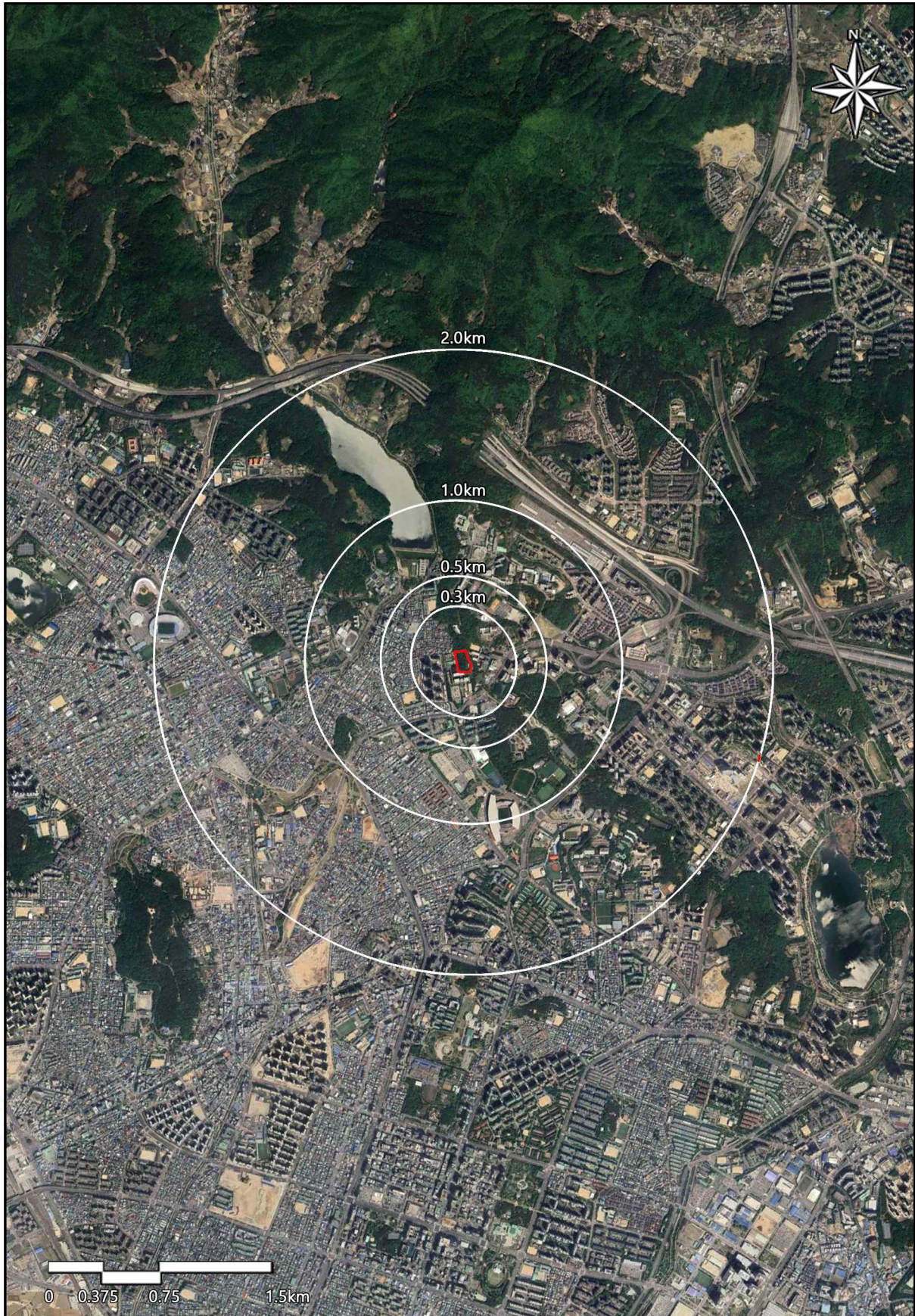
구분	평가항목		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	평가대상지역	
				공간적	시간적
입지의 타당성	◇ 자연환경의 보전				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◦ 지형형상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	공사시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◦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 및 주요 조망점	운영시
	수환경의 보전	수질	◦ 수질관련 보호지역 및 수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 및 하류 수용하천	공사시 운영시
	◇ 생활 환경의 안정성				
	환경기준 부합성	대기질	◦ 대기오염물질 확산으로 인해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	공사시 운영시
		토양	◦ 폐유 및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	공사시
		소음·진동	◦ 소음·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	공사시 운영시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◦ 환경기초시설 현황	계획지구 및 수원시	운영시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	공사시 운영시
	◇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			
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토지이용	◦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계획지구	운영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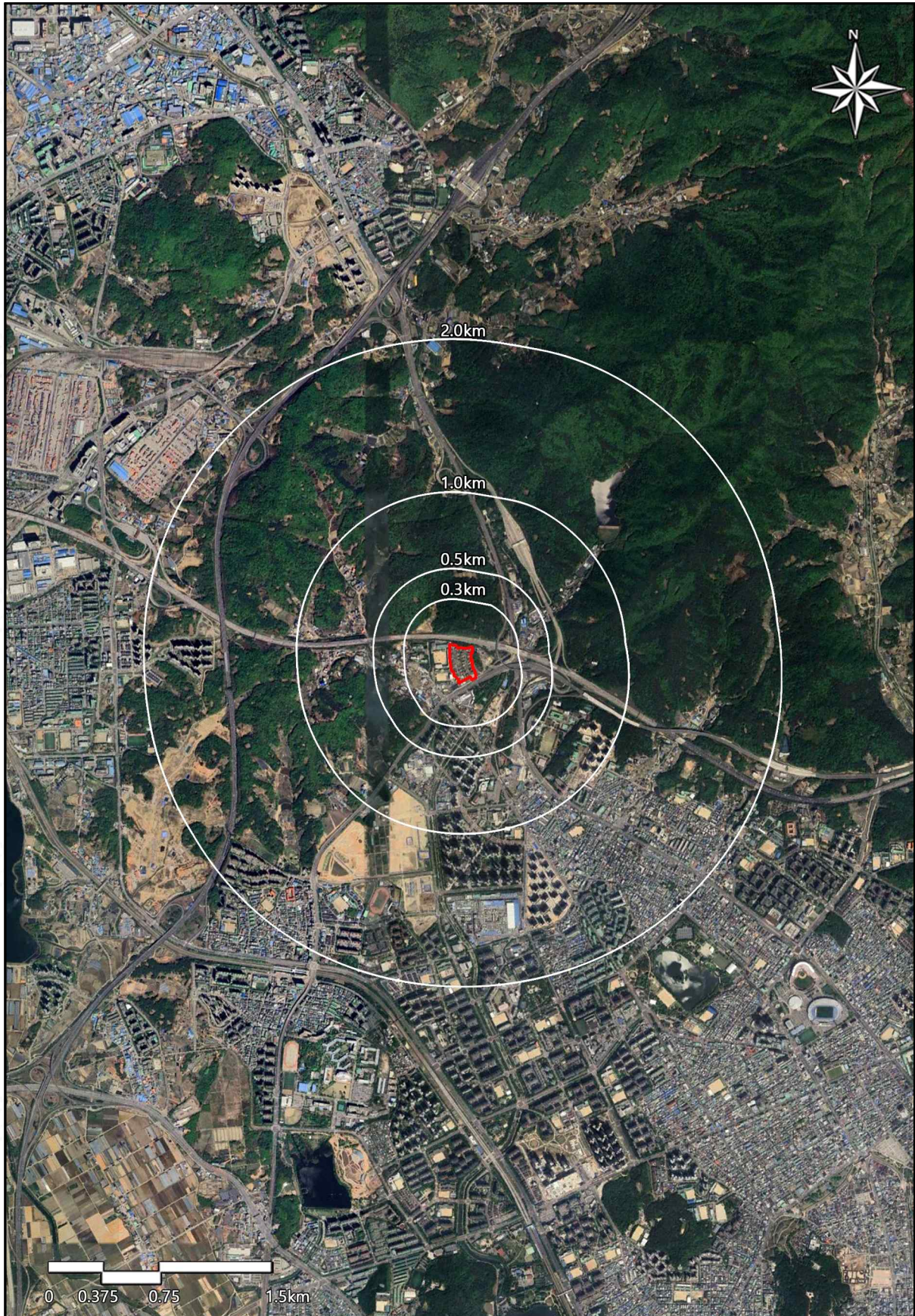
(그림 3 - 1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동남보건대학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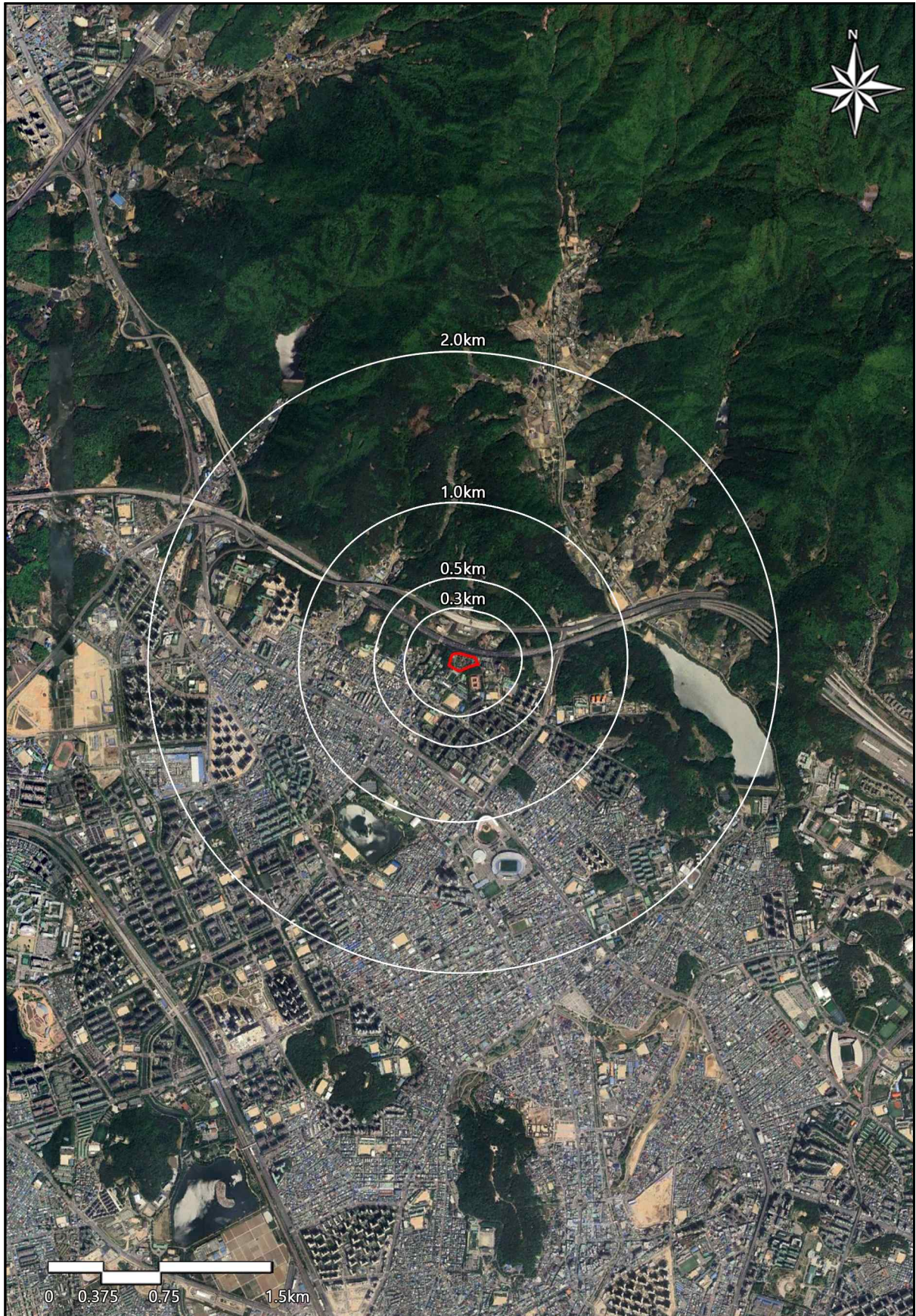
(그림 3 - 2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아주대학교



(그림 3 - 3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경기남부경찰청



(그림 3 - 4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동원고 일원



(그림 3 - 5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솔대성당 일원

3.2 대안의 설정

3.2.1 대안의 종류 및 선정

- “대안”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.
- 본 계획수립에 따른 대안은 ‘2025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전략환경영향평가’ 및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10호)」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별 선정방법을 참고하여 대안을 선정하고 비교·검토함.

<표 3 - 2> 대안의 종류 및 선정

대안종류	대안 선정방법	선정여부
계획비교	◦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◎
수단·방법	◦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	×
수요·공급	◦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×
입지	◦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	×
시기·순서	◦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×
기타	◦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

<표 3 - 3> 대안의 설정 내용

대안	선정기준	내용	
계획비교	계획수립 여부	1안	행정계획 미수립(No Action)
		2안	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(Action)

3.2.2 대안의 비교 · 검토

가. 계획비교 대안

- 계획수립시(Action)와 계획미수립시(No Action)에 대하여 계획적 측면에서의 장 · 단점,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, 지형 훼손, 자연경관영향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비교 · 검토함.

<표 3 - 4> 계획비교 대안의 검토

구 분	대 안	
	1안 : 계획미수립시 (No Action)	2안 : 계획수립시 (Action)
개요	◦현상태 유지	◦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
장 점	◦현상태 유지로 환경변화 없음	◦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 ◦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
단 점	◦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◦공공시설 발전방향 미반영 및 주거생활의 불편함 가중	◦재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
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	◦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	◦기 개발된 지역으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
생태계 훼손 가능성	◦생태계 훼손 가능성 없음	◦기 개발된 지역으로 추가 생태계 훼손은 발생하지 않음
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	◦지형의 변화 없음	◦본 계획단계에서 지형 훼손 및 변화 검토는 어려우나 기조성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계획으로 지형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	◦본 계획단계에서 경관 변화의 예측은 불가능하나 추후 개발사업 시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스카이라인 변화 등 주변 자연경관의 변화 가능성 있음
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	◦현 상태의 환경질 유지	◦추후 개발사업 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예상됨

3.4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

3.4.1 전략환경영향평가

가. 평가항목 설정

- 평가항목의 선정은 ‘2025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’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설정된 조건을 검토하여 금회 평가대상지에 동일하게 설정하고, “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1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 등에 대한 그 사유를 제시함.

<표 3 - 5>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

구분	평가항목		선정여부			선정(제외)사유
			중점	일반	제외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	○			◦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		○		◦대안 설정·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
입지의 타당성	◇ 자연환경의 보전					
	생물다양성· 서식지보전	동·식물상	○			◦계획지구는 현재 기개발된 지역으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 영향은 미미함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○			◦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·지질 분포현황, 생태축 훼손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여부 검토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○			◦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
	수환경의 보전	수질	○			◦수질관련 보호지역 및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◦용수공급량 및 오수발생량 변화 검토
		해양환경			○	◦계획시행과 연관 없음
	◇ 생활 환경의 안정성					
	환경기준 부합성	대기질 (기상포함)	○			◦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환경 기준 부합성 검토
		악취			○	◦계획시행과 연관 없음
		토양		○		◦계획시행으로 인한 적정성 검토
		소음·진동	○			◦계획시행시 소음·진동 발생으로 인한 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	전파장해			○	◦계획시행과 연관 없음
		일조장해			○	◦본 계획단계에서의 검토 불가능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	○		◦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
	자원·에너지 순환의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			◦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
	◇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				
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토지이용	○			◦계획시행 전·후의 토지이용 변화 검토
	인구 및 주거			○		◦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·주거 변화 검토
	산업				○	◦계획시행과 연관 없음

나.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- 본 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은 <표 6.2-1>와 같이 설정함.
- 금회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정량적인 분석 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이 가능한 계획이며, 현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영향예측은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 및 계획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성적인 예측 위주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.

<표 3 - 6> 평가범위 및 방법

평가항목			평가범위	평가방법
◇ 계획의 적정성				
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		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◦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자료 분석
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		계획지구	◦계획수립시(Action)와 계획미수립시(No Action)의 계획비교·분석
◇ 입지의 타당성				
자연 환경의 보전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계획지구	◦계획시행에 따른 지형 변화 및 지형적 단절 발생 여부 검토 ◦산림축 훼손 가능성 검토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계획지구 및 주요 조망점	◦생태적,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포함여부 조사 ◦계획시행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여부검토
	수환경의 보전	수질	계획지구 및 하류 수용하천	◦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수계 및 수환경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
생활 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대기질	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◦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예측 및 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	토양	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◦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토양 영향예측 및 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	소음·진동	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◦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·진동 영향예측 및 환경기준 부합성 검토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계획지구 및 수원시	◦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및 적정성 검토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계획지구	◦계획시행에 따른 각종 폐기물 발생 검토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토지이용	계획지구	◦계획시행 전·후의 토지이용 변화 검토

3.4.2 기후변화영향평가

-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은 「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,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8호, 2025.11.3, 기후에너지환경부」를 참조하여 선정함

<표 3 - 7> 평가항목,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선정결과 및 사유

분 야	항 목	범 위	방 법	비 고
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	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·계획과의 적정성	국가 및 지자체	- 주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계획·정책과의 부합여부를 평가 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- 시·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등	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예상
	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	국가 및 지자체	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목표, 감축전략, 감축방안 검토	
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	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·계획과의 적정성	국가 및 지자체	- 주요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가계획·정책과의 부합여부를 평가 -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 -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	
	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	국가 및 지자체	기후위기 적응요인(폭염, 폭우, 산사태 등)에 대한 국가 적응대책과 연계한 적응방안 검토	

4.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

4.1 협의회 구성 및 개요

- 주관기관 : 수원시
- 심의기간 : 2025. 06. 01. ~ 2026. 07. 06.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위원 : 10인(위원장 포함)
 -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(3인)
 -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(4인)
 -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(3인)

<표 4 - 1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현황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의견 제출	비 고
위원장	수원시	국장	김○○	○	
위원1	수원시	과장	권○○	○	
위원2	수원시	주무관	한○○	○	
위원3	한강유역환경청	주무관	홍○○	○	
위원4	한국환경연구원	연구위원	사○○	○	
위원5	한국환경연구원	연구위원	문○○	○	기후변화 영향평가
위원6	한국환경연구원	연구위원	김○○	○	기후변화 영향평가
위원7	(주)OOENG	상무	김○○	○	
위원8	수원환경운동연합	사무국장	이○○	○	
위원9	원천동 주민자치회 회장	주민대표	윤○○	○	

4.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

◎ 위원장 (김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본 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□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본 계획은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것으로, 환경보전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본 계획은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것으로, 평가대상지역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

3. 토지이용 구상안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지역 여건 분석 등을 통하여 현황 및 계획에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 바람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본 계획에서 제시한 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

5. 평가 항목범위·방법 등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, 평가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또는 제기된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함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람

7. 기 타

-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,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

2026. 6. 12.

심의위원

◎ 위원1 (권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,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개발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여야 함

□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**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**

- 환경보전목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대기질, 수질, 소음·진동 등 주요 환경요소에 대해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,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

3. 토지이용 구상안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로서, 토지이용 구상은 전반적인 개발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검토된 것으로 판단됨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대안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

5. 평가 항목범위·방법 등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을 설정하고, 환경오염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·공고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

7. 기 타

- 별도 의견 없음

2026. 6. 12.

심의위원 권

◎ 위원2 (한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본 계획은 수원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,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환경보전목표, 평가 대상지역, 토지이용 구상안, 대안 설정,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및 주민의견 수렴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대상지별 주변 환경여건을 검토하고, 장래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저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 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주민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지역을 표기한 종합위치도를 제시하고, 대상지별로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생물보호구역, 하천·수계 등 주요 환경관련 지구·지역과의 중첩 여부, 최근접 이격거리 등을 표기하기 바람.
 -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예측 과정에서 조사 지역·지점 선정 근거, 예측방법·조건 등의 선정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.
 -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증가하는 지역은 녹지 감소, 불투수면 증가, 우수유출 등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,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바람.
 -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항목·범위·방법을 토대로,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·흡수원 변화,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후변화 영향을 검토하고, 적용 가능한 저감 및 적응대책을 제시하기 바람.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 -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
7. 기 타
 - 주민의견 수렴 시에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내용과 주요 환경영향을 설명하고,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.
 - 향후 세부 계획 수립 또는 개별 사업 추진 단계에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별도 검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.

2026 . 6. 15.

심의위원 한

◎ 위원3 (홍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금회 계획 수립을 통해 이전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명확히 비교·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리·기술하고, 관련 예시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
-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
 -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별표2. 비교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계획은 음영표시로 구분하여 제시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 - 변경되는 용도지역 등 해당 계획 및 주변 지역의 환경 현황, 개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큰 축적의 위성지도(토지현황 명사) 및 용도지역(변경 전 후) 등 정보를 집약하여 표로 제시하여야 함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✓), 수정의견()
7. 기 타
 -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·범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2026 . 6 .

심의위원 홍

◎ 위원4 (사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자연보전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밀도 상승 및 개발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환경현황 등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: 동의에 “√”표시

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: 수정의견에 “√”표시하고,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수정·추가 의견을 작성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환경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토지이용 구상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아주대학교 운동장 및 병원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계획하고 있어 급격한 개발밀도 상승이 예상됨. 본 평가준비서는 계획수립과 미수립에 대해서만 대안비교를 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안비교가 필요함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※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시 기존자료나 공공데이터 활용, 필수 평가항목 제시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의견 제시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7. 기 타

- 의견없음

2026 . 6 . 11.

심의위원 사

◎ 위원5 (문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본 건은 경기도 수원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2030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(기후변화영향평가 감축부문)에 대한 검토의견임
-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□ 평가항목 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- 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**이견이 없는 경우** : 동의에 '√' 표시
- 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**의견이 있는 경우** : 수정의견에 '√' 표시하고,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수정 추가의견을 작성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,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적합성, 관련 계획과의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토지이용 구상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등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계획에 대한 대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. 특히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

5.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금회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산정하고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
 - 국가 및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관련 계획에서의 전략과 목표와 금회 도시관리계획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
 - 단·중·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대책 수립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7. 기 타

-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

2026 . 7.

심의위원 문

◎ 위원6 (김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본 건은 2030년 수원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안 평가준비서 중 기후위기 적응 부문에 관한 의견으로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기후 리스크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- 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: 동의에 “√”표시
- 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: 수정의견에 “√”표시하고,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수정·추가 의견을 작성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환경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토지이용 구상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시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과 세부시행계획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대책에서 분석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관련 대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기후변화 위험 평가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이 외에 환경계획, 국토계획,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개발과 보전 등 관련 계획의 관점에서 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기후변화 위험 평가 시 해당 사업 지역이 산사태 혹은 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7. 기 타

-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

2026 . . .

심의위원 김

◎ 위원7 (김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본 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, 수원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임.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,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: 동의에 "√"표시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: 수정의견에 "√"표시하고,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수정·추가 의견을 작성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 - 계획구역(블록)별 계획내용 및 관련도면을 구체적으로 제시
 -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시 "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" 등 관련 규정 및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.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 -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초안 공람·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.
7. 기 타
 -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야 함.

2026 . 6 . 8 .

심의위원 김

◎ 위원8 (이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- 평가를 하기에 주민의견 수렴 계획,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연계 계획 등의 내용이 부족합니다.
- 그 과정에서 도로는 결과적으로 9개소가 늘고, 공원과 녹지는 각각 1개와 3개가 폐지되는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거리가 멉니다.
- 기해손지의 토지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영향을 축소해서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
- 방화지구 축소와 폐지는 어떤 부지가 어떤 이유로 폐지되고 축소되는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.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**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**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환경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평가항목에 기후변화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공사 시와 운영 시 교통량 증가, 에너지 사용 증가,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여건 변화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.
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동남보건대 일원의 경우 대학이 토지이용을 변경하며 누릴 이익만큼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아주대 일원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의 관리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은 부족합니다. 토지이용 변경이 아니라 녹지로 활용할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. 또, 준주거지역으로 바꿀만한 인구의 증가 등의 지표가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.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), 수정의견(√)

- 보호지역과 생태계 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근린시설이 들어섰을 때 개발압력 증가 여건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. 특히 동원고 일원은 자연녹지와 밀접해 있어 더욱 면밀한 대안이 요구됩니다.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**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**

-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7. 기 타

-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

2026 . 6. 11.

심의위원 이

◎ 위원9 (윤○○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

[계획명: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]

□ 총괄의견

○

□ 평가항목·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

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: 동의에 "√"표시

※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: 수정의견에 "√"표시하고,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수정·추가 의견을 작성

1.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○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환경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

2.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○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3. 토지이용 구상안(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○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토지이용 구상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4. 대안의 설정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○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5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○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※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시 기존자료나 공공데이터 활용, 필수 평가항목 제시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의견 제시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(개발기본계획만 해당) : 동의(√), 수정의견()

○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,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(안)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

7. 기 타

○

2026 . . 8 12

심의위원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5.1 관계기관 의견수렴

- 본 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2항 관련 [별표2]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3조(기후변화영향평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(기후변화영향평가)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14조 및 「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.

5.2 주민 등에 의견수렴

5.2.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

-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.

5.2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의거하여 14일 이상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(초안)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할 계획이며, 공람장소는 추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.
-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(www.suwon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 공고·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(초안) 내용을 게시할 계획임.